

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관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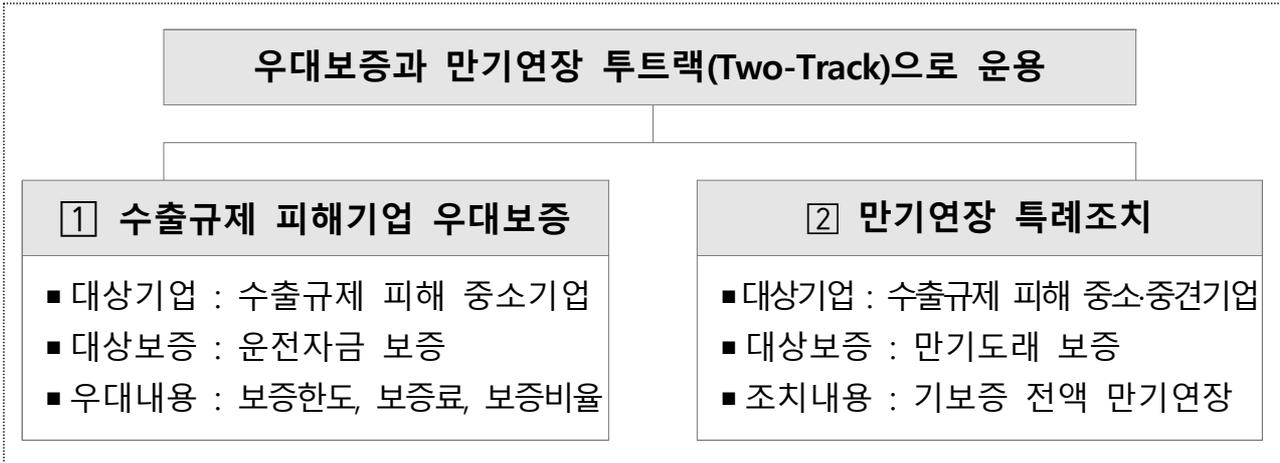
주요 보증지원 제도 안내

(2019. 9. 17)



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

□ 특별보증 프로그램 운용



1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규보증(우대)

□ 대상 기업

-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① ~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
- ① '18.1.1일 이후 수출규제 품목 수입실적을 보유(수입예정 포함)한 기업*
- ② 18.1.1일 이후 수출규제 품목을 구매(구매예정 포함)한 기업*
 - * 수입신고필증, 내국신용장, 구매계약서, 매입(세금)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
- ③ 정부, 지자체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영안정자금 등을 배정받은 기업

※ 기술보증기금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우대보증 상담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은 본 우대보증 대상 기업에서 제외

- 수출규제 품목범위 : 총 2,256개 품목

※ 직·간접 피해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품목범위 확대(156개→2,256개, 9/4)

□ 대상 채무 :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

□ 우대사항

○ 보증한도 우대

- 매출액 한도 : (현행) 추정매출액*의 1/3~1/6 → (변경) 1/2~1/4

* 최근 매출액 또는 당기 매출액 적용 가능

- 자기자본 한도 적용 제외

○ 보증비율 우대 : 90% 적용

○ 보증료율 우대 : 0.3%p 차감

□ 보증기한

○ (대출보증·제2금융보증) 5년 이내로 운용(장기분할해지보증 취급을 원칙)

○ (대출보증·제2금융보증外) 해당 기준에 따라 보증기한 운용

□ 우대보증 운용한도 : 1조원

2

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만기연장

대상기업

-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우대보증 대상기업과 동일
- (제외대상) 휴·폐업 상태인 기업 등 계속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, 책임경영의무 위반에 따른 특별약정체결 대상기업은 제외

보증 운용 방법(전액 만기연장)

- 특례조치 기간 내 기일 도래하는 대상기업의 보증 전액에 대하여 조건 변경 또는 갱신보증 취급으로 전액 1년간 연장(일부해지기준 적용 배제)
-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규모 초과에 따른 가산보증료 적용 배제

시행일: '19. 8. 6. (화)

운용기한: '19. 12. 31. (필요시 연장)

3

수출 피해기업 지원 실적 ('19.9.16.현재)

총 지원 실적 (부산경남) : 12개사, 2,398백만원

- ① 신규 : 7개사, 1,577백만원
- ② 만기연장 : 5개사, 821백만원

※ 신보전체 : 신규 34억원, 만기연장 61억원

수출 중소기업 특례보증

- (사업개요)** 對일본 수출기업 등 수출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돕고 수출성장 모멘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특례보증 시행

- (신청자격)** 수출 단계별로 차등 적용
 - (수출초보) 미화 100만 달러 미만 또는 수출 예정기업
 - (수출도약) 미화 1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
 - (일본수출)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본 수출실적 보유기업※ 수출실적 산정시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판매한 간접수출실적도 포함

- (대상채무)**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

- (특례조치 및 우대사항)**
 - 보증비율 우대 95% 적용, 보증료율 0.3%p차감
 - 보증한도 우대(추정매출액의 1/2~1/3) ※ 일반기업 1/3~1/6
 - 전결권 하향 : 기존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본건 5억원이하는 영업점장 전결로 취급

- (지원한도)**
 - (수출초보) 추정매출액의 1/3
 - (수출도약, 일본수출) 추정매출액의 1/2

- (지원규모)** 총량 8,000억원

- (지원실적 9.16기준)** 부산경남 409억원, 신보전체 1,995억원

- (신청기한)** '19년말까지 (필요시 연장)